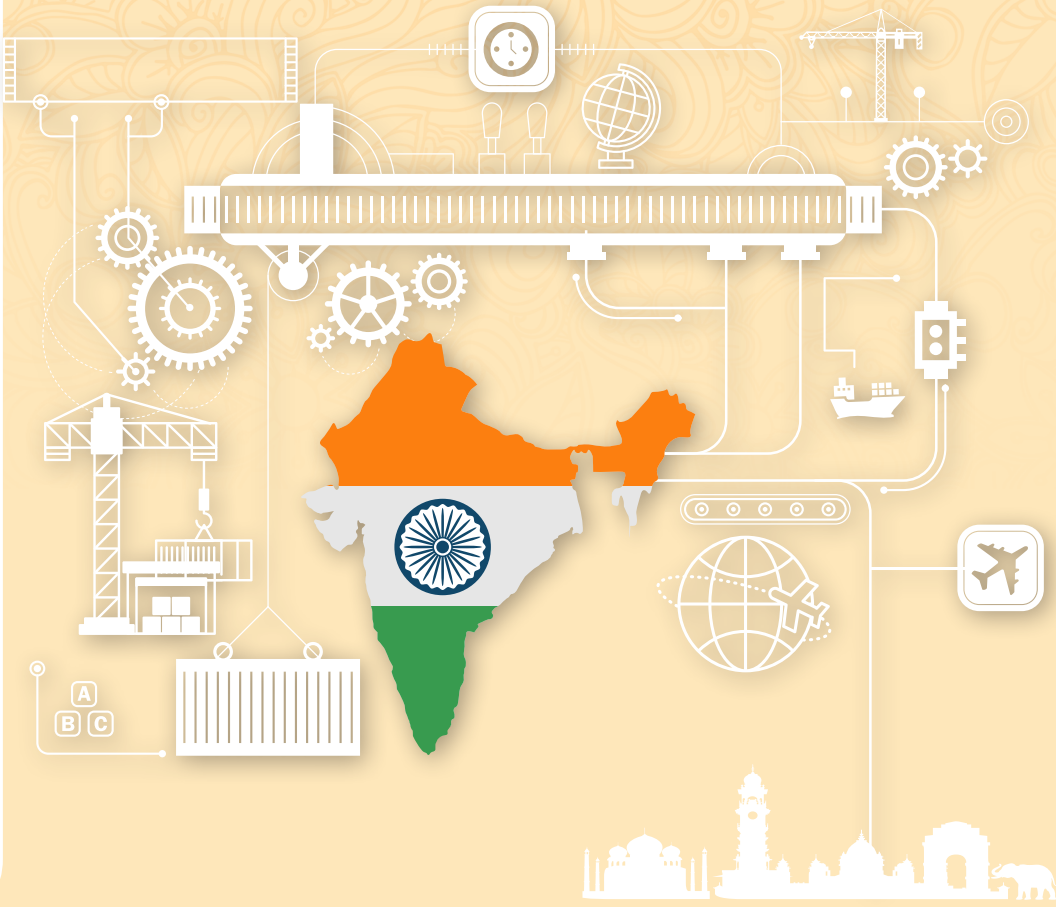

인도편 India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Ⅳ 인도 통상정책

1. 최근 인도의 통상정책 동향
2. 인도의 무역구제조치
3. 한-인도 CEPA에서의 무역구제

01

최근 인도의 통상정책 동향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시행

인도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인도통합부가가치세(GST) 시행

- GST의 시행은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으로 평가
- 그간 인도의 복잡한 조세체계는 기업 활동의 장애요소로 제기됨
- 지금까지 연방정부(소비세, 서비스세, 수입부가가치세) 그리고 주 정부(주내 거래에 대한 VAT, 진입세, 사치세 등)에서 각각 별개로 부과하던 간접세들을 단일세제로 총괄하여 합침[26]

  ※ 단 모든 거래와 기존 주정부의 세제들이 GST로 통합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필요

인도의 조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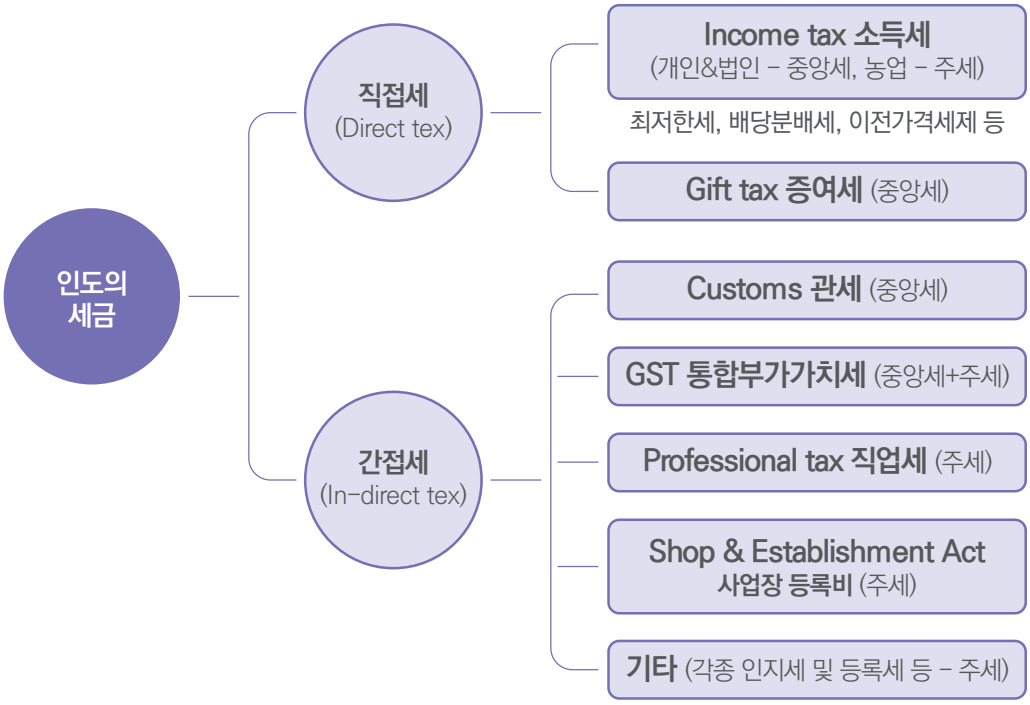

자료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 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2017)

Dual GST 체계[27)]

- 인도 GST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과세하는 Dual GST 체계
- 따라서 주내 거래에는 CGST(Central GST), SGST(State GST)가 동시에 적용되며,
- 수입이나 주간 거래에는 CGST와 SGST를 통합한 IGST(Intergrated GST)가 적용

인도 GST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과거 간접세 항목	GST
재화 Goods	수입거래	기본 관세(BCD : Basic Customs Duty) 및 Customs Cess	BCD 및 Customs Cess
		추가 관세(CVD)	IGST (CGST + SGST) (우리 나라 수입부가가치세에 대응)
		특별 추가 관세(SAD)	
	주간거래	진입세(Octroi, Entry Tax)	IGST (CGST + SGST)
		연방소비세(Excise Tax)	
		연방판매세(CST)	
	주내거래	연방소비세(Excise Tax)	CGST / SGST
		부가가치세(VAT)	
서비스 Service	수입	서비스세(Service Tex)	IGST (CGST + SGST)
	주간	서비스세(Service Tex)	
	주내	서비스세(Service Tex)	CGST / SGST

자료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 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2017)

인도통합부가가치세(GST)의 구분

• GST는 품목군에 따라 세율*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재는 비교적 세율이 낮고, 사치제 · 내구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함

* 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함

☞ 홈페이지: www.cbic.gov.in/index

• GST 하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세율 분류는 다음과 같음

세율	품목
면세 (Nil Rate)	• 신선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버터, 두부 • 신선한 과일과 야채, 밀가루, 소금 등
5% (Lower Rate)	• 크림, 분유, 냉동 야채, 커피, 차, 향신료 • 피자 빵, 등유, 석탄, 의약품
12% (Standard Rate)	• 포장된 냉동 육류 제품, 소시지, 과일 쥬스 • 치약, 그림책, 버터, 치즈, 휴대폰 등
18% (Standard Rate)	• 정제된 설탕, 파스타, 케이크, 보존된 야채 • 잼, 철강 제품,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18%에 포함
28% (Higher Rate)	• 껌, 초콜릿, 코코아, 페인트, 헤어 샴푸, 벽지 • 온수기, 식기 세척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 담배,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등

주 : 예를 들어 1) 18%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주내에 공급하는 경우 S-GST 9%, C-GST 9%로 나누어서 징수하고 주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I-GST 18% 징수

2) 28%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 일부(자동차 , 담배)는 목적세(cess)가 가산되며, 그렇게 징수된 목적세는 GST 시행으로 세금이 줄어든 주정부의 재정보전에 사용

자료 : 관세청,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2017)

GST의 시행 효과

• GST는 간접세 자체의 변화(세목, 세율, 적용방법 등) 외에도 주간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물류의 흐름 개선, 사업 편의성 증진(Ease of Doing Business), 투자 확대 용이성 등 개선 기대

인도 통상정책, 「Make in India」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예상

■ **2019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2015년부터 인도 정부가 시행해 온 'Make in India' 중심으로 각종 정책의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측됨**

- Make in India 정책은 인도를 전 세계의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임
- 인도정부는 제조업 진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측됨
- Make in India 정책 목표 및 구성은 다음과 같음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원, 인도 'Make in India' 정책 성과가 2019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2019)

인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정책

■ 2019년 전자상거래 규제 정책(New FDI e-commerce) 시행

-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해외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28)]
- 그러나 2019년 2월[29)]부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정안(New FDI e-commerce)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인도해외직접투자 수정안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이커머스 플렛폼에서 해당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판매자와 독점적 마케팅 계약을 통해 직 · 간접적으로 제품 가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음
- 매출의 25% 이상을 단일 이커머스 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음
- 판매 재고가 없는 구매자-판매자 연결 플랫폼 형태만 100% FDI를 허용
- 100% 인도제품을 판매하는 인도회사의 풀랫폼만 판매재고 형태를 허용

자료 : 유진투자증권, Amazon, Walmart의 주가하락 배경이 된 인도 전자 상거래 규제점검 (2019)

인도 전자상거래 주요정책 및 현황

■ **인도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및 스킬 인디아(Skill India)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정책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부정책은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와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
• Make in India와 마찬가지로 인도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인도 내 사회전반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임	• 인도 정부가 2016년에 발표한 지원정책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하여 인도 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여러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부상 중

■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

- 인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인터넷 사용자 증가, 휴대폰 보급 확대 및 전자결제시스템 발전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자료에 따르면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385억 달러에서 2020년 640억 달러 추후 2026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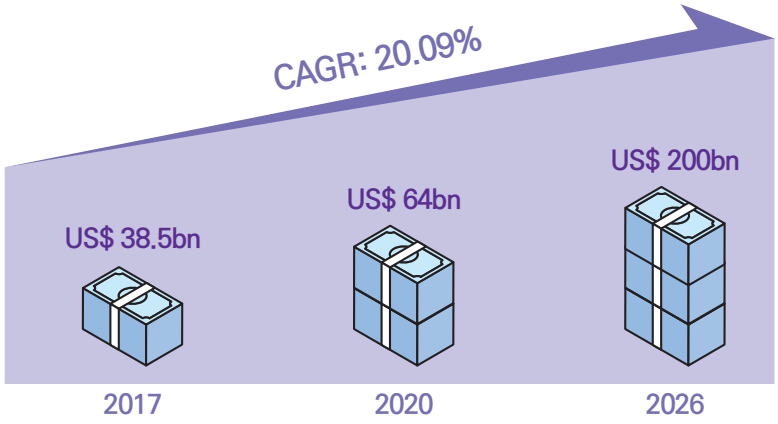

자료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홈페이지 ('19년 7월 기준) (Last Updated: July, 2019)

- 또한 인터넷 사용자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까지 8억 2,9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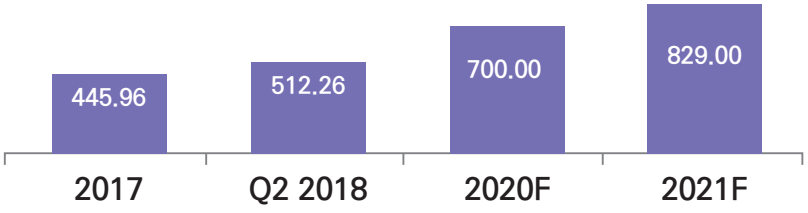

주 : F – 추정치, Q2 2018 – '18년 6월 기준(As of June 2018)
자료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홈페이지

■ 인도 전자상거래 주요 유통제품

•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제품은 전자제품(48%)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패션 및 의류관련 제품(29%), 홈퍼니싱(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등)(9%), 유아용품 · 화장품 등(8%), 서적(3%), 기타(3%) 순으로 나타남[30]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유통되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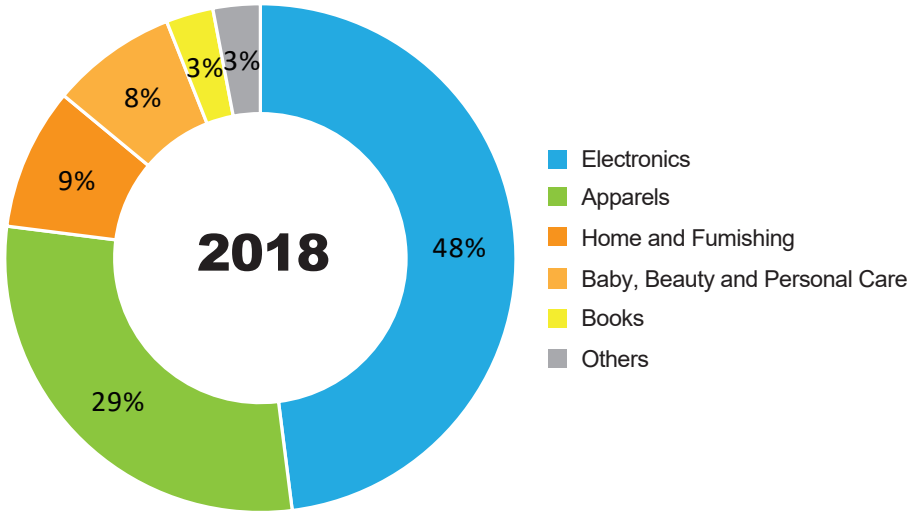

자료 :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홈페이지 ('19년 7월 기준)(Last Updated: July, 2019)

■ 인도 전자상거래 성장을 이끄는 업체들

- 인도의 기업별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플립카트(Flipkart)가 32%, 아마존 31%, Paytm Mall 5.6% 순임
- (플립카트) 2007년 설립된 인도 전자 상거래 기업이었으나 2018년 미국 월마트에 인수됨
- (아마존) 2013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2위 마켓리더로 자리잡고 있음
- (Paytm Mall) 인도의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Paytm가 2016년 개설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인도 기업별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2018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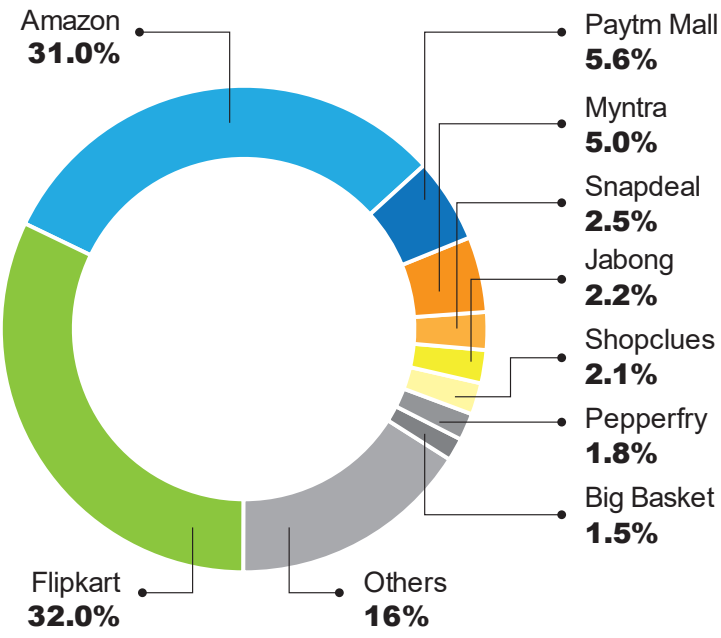

자료 : India Equity Research on Twitter (검색일자: '19.08.02.)

구분		주요 내용
1	플립카트 (Flipkart)	• 홈페이지 : http://www.Flipkart.com • 주요 내용 : 2007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업체로 본사는 벵갈루루에 위치 ※ 2018년 월마트가 인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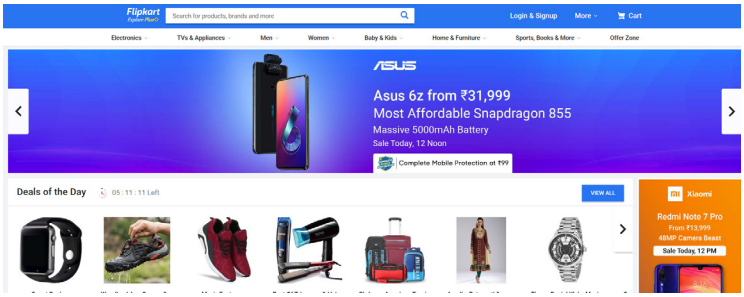
2	Amazon	• 홈페이지 : http://www.Amazon.in • 주요 내용 :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2013년에 인도 지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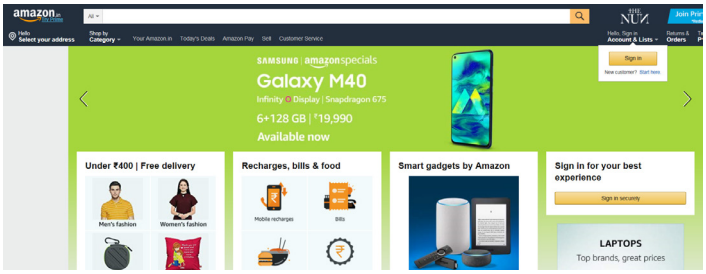
3	Paytm Mall	• 홈페이지 : https://paytmmall.com/ • 주요 내용 : 인도의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Paytm이 개설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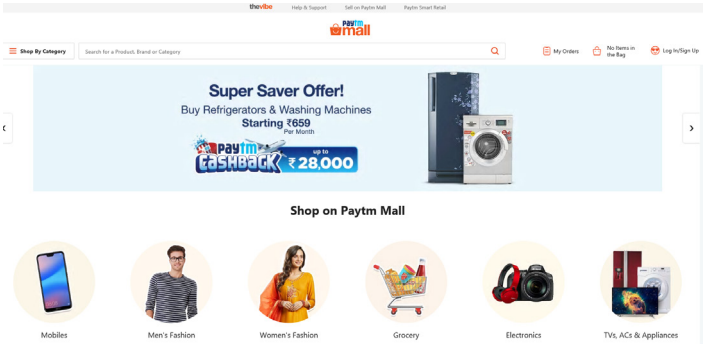

자료 : 각 업체별 홈페이지

인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 **인도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주도하면서 '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

- 최근 인도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 증가
- 1991년 시장개방 이후, 인도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과 특혜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인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무역구제조치 구분 및 주요 내용

종류	주요 내용
반덤핑 (Anti-Dumping Measure)	•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자국 내 판매가격 등)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31]
상계관세 (Countervailing Measures)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 또는 소득 · 가격 지원 형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 이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며, 이 보조금이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32]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조치하는 수입구제조치임 •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덤핑 ·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임[33]

02

인도의 무역구제조치

인도의 무역구제 동향

■ 반덤핑 현황

• WTO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반덤핑 조사 누적건수는(1995년~2018년까지) 총 919건임

• 특히 2016년 반덤핑 조사 건수는 역대 최다로 69건을 기록함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반덤핑	합계	4,519	236	229	298	249	194	5,725
	인도	702	38	30	69	49	31	919
	미국	507	19	42	37	55	34	694
	EU[34]	454	14	11	14	9	8	510
	브라질	334	35	23	11	7	7	417
	아르헨티나	309	6	6	23	8	16	368
	호주	267	22	10	17	16	12	344
	중국	211	7	11	5	24	16	274
	캐나다	183	13	3	14	14	14	241
	남아프리카공화국[35]	227	2	–	–	–	2	231
	터키	168	12	16	17	8	6	227
	멕시코	115	14	9	6	8	3	155
	한국	121	6	4	4	7	5	147

주 : 반덤핑 조사 건수가 많은 국가를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34)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통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회원국을 하나의 국가로 계산함

3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통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남아프리카관세동맹(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을 기준으로 함

■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현황

- 인도가 1995년~2018년까지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국가는 중국으로 223건(24.3%), 한국 68건(7.4%), EU 67건(7.3%), 대만 64건(7%), 태국 52건(5.7%) 순으로 많았음
- 특히 우리나라는 68건으로 인도의 반덤핑 조사 2위 대상국임

인도의 국가별 반덤핑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8
1	중국	223
2	한국	68
3	EU	67
4	대만	64
5	태국	52

주 : 반덤핑 조사 건수가 많은 국가를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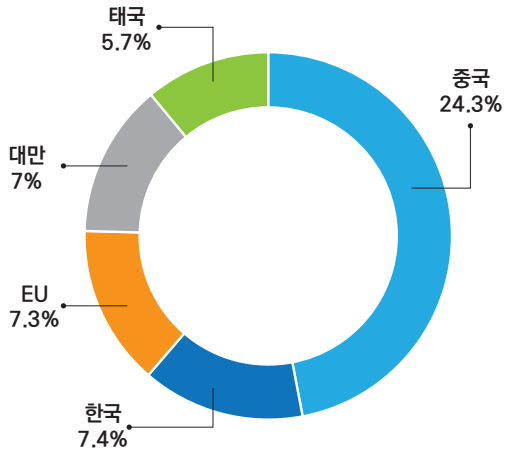

■ 인도의 산업별 반덤핑 현황

• 산업별로 인도가 반덤핑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분야[36]에 392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플라스틱[37] 등 129건, 철강[38] 108건 순임

인도의 산업별 반덤핑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8
1	화학	392
2	플라스틱 등	129
3	금속	108
4	기계[39]	96
5	섬유[40]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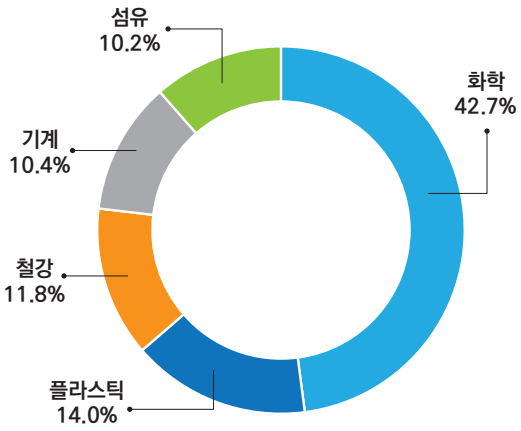

주 : 반덤핑 조사가 많은 품목을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36) WTO 정식명칭은 Products of the chemical and allied industries임

37) WTO 정식명칭은 Resins, plastics and articles; rubber and articles임

38) WTO 정식명칭은 Base metals and articles임

39) WTO 정식명칭은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임

40) WTO 정식명칭은 Textiles and articles임

■ 상계관세 현황

- 그간 인도의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반덤핑 조사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2018년 들어 한해에만 10건을 기록하여 급증하는 움직임을 나타냄

전 세계 상계관세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상계관세	합계	335	45	31	34	41	55	541
	인도	1	1	–	1	–	10	13

주 : 인도만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 긴급수입제한조치 현황

-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WTO 출범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조사를 한 국가로 나타났음

전 세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긴급수입 제한조치	합계	272	23	17	11	8	16	347
	인도	32	7	2	1	1	0	43
	인도네시아	23	3	1	0	0	2	29
	터키	17	3	1	0	2	2	25
	칠레	15	0	4	0	0	1	20
	요르단	16	1	0	1	0	0	18

주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수가 많은 국가를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 산업별로는 화학, 금속, 플라스틱 등 제품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절반 이상이 화학에서 발생함

인도의 산업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수(1995~2018)

[단위 : 건]

구분	1995~2018	조사건수
1	화학[41]	23
2	금속[42]	8
3	플라스틱[43]	3

주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많은 품목을 한정하여 작성

자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인도의 무역구제 주요 기관[44]

- 인도에서 무역구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다양하지만(재무부 등)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무역구제 조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의 무역구제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으로 포괄적으로 무역구제 업무를 당담함
- 무역구제사무국(DGTR)으로 무역구제 업무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CVD) 관련 업무는 DGAD(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 업무는 DGS(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 그리고 수입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 (QR) safeguard) 관련 업무는 DGFT에서 담당하였음
- 무역구제사무국(DGTR)은 반덤핑 방지, 상계관세(CVD)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도 산업 및 수출업자들에게 다른 국가에 의해 제기된 무역구제 조사를 제공함으로써 자국 내 무역구제 지원을 제공함

  ※ 무역구제사무국(DGTR)은 WTO 협정, 관세법 및 규칙 그리고 기타 관련 법 체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모든 수출국의 덤핑 및 불공정 거래의 관행으로부터 인도 산업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목적을 둠

41) WTO 정식명칭은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임

42) WTO 정식명칭은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임

43) WTO 정식명칭은 Plasticsand articles thereof; rubber and articles thereof임

무역구제사무국(DGTR)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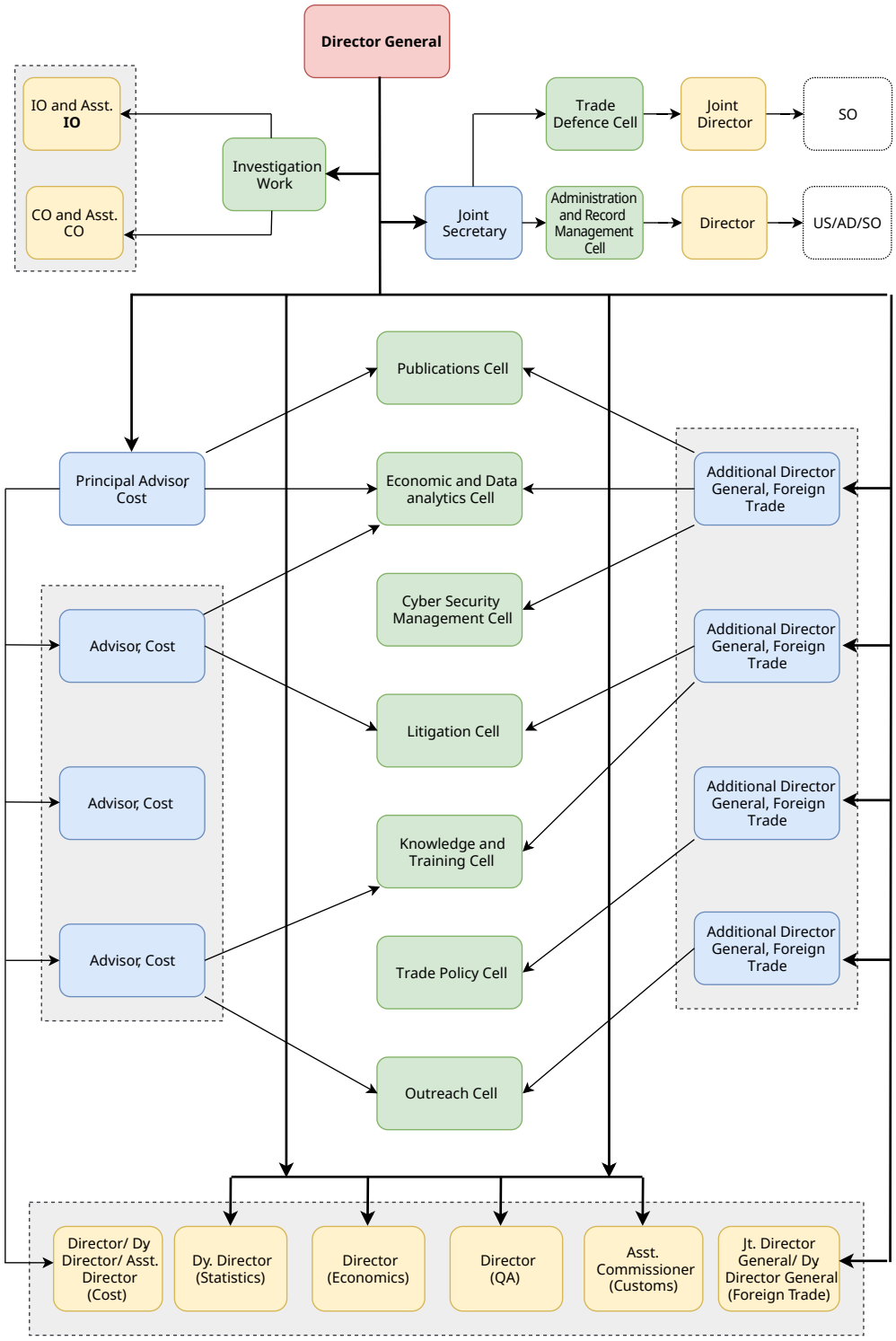

자료: 무역구제사무국(DGTR) 홈페이지

1. 반덤핑 · 상계관세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사례 조회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dgtr.gov.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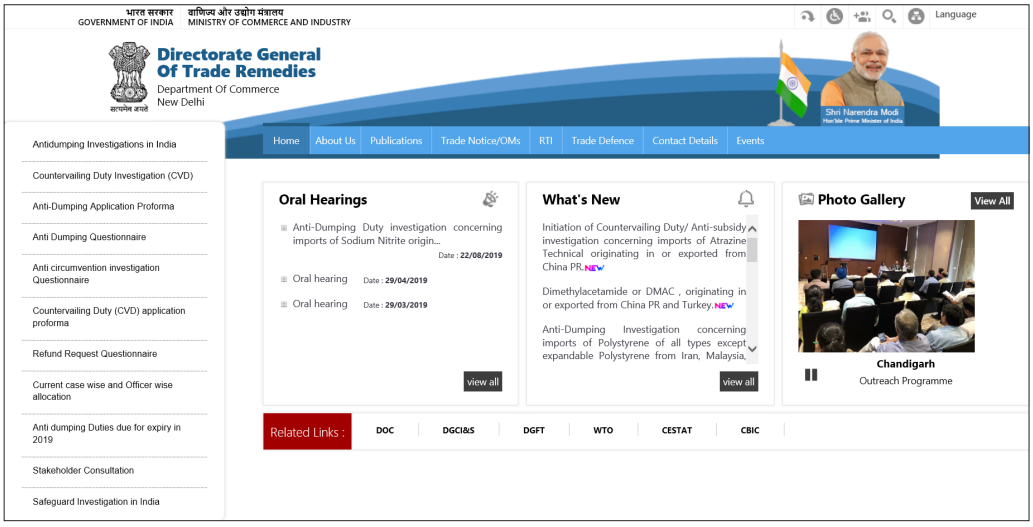

2. 확인하고자 하는 무역구제(반덤핑 · 상계관세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선택

① 반덤핑 조사(Antidumping Investigations)

② 상계관세 조사(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③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Safeguard Investigation in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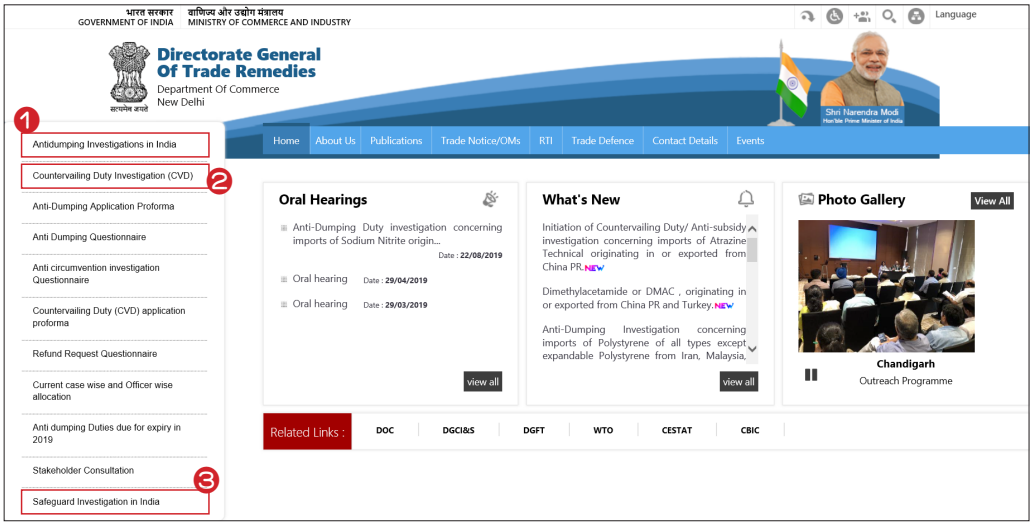

3. 좌측상단 ① 반덤핑 조사(Antidumping Investigations)를 선택하면 → A. 현재 조사 진행 중(Anti-Dumping Ongoing Investigation)인 반덤핑 조사 및 B. 조사가 완료된 (Anti-Dumping Concluded Investigation) 반덤핑 사례 조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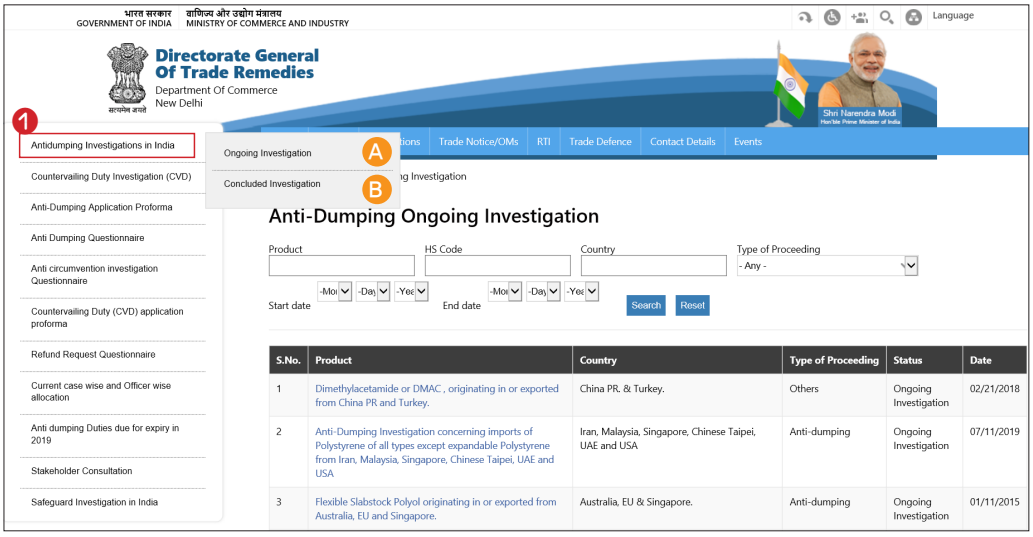

• 반덤핑 규제 절차 업무는 다음과 같음

	단계	주요내용
1	조사 전(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시(업체로 부터), 이를 문서화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자료 수집함
2	조사 실시	업체로부터의 청원 신청을 토대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역구제사무국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개 통지가 발행
3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 공표	무역구제총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가 개시된 주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함.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60~70일 이내에 완료됨
4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 중앙 정부는 무역구제 사무국의 조사 보고서 권고에 근거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관세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만 유효하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5	이해 당사자의 구두 증거 수집 및 공청회 개시	이해 당사자(국내 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자, 수입업자, 외국 정부, 협회 및 상공회 등)는 조사 관련 정보와 개별 의견 개진 기회를 무역구제사무국에 요청 가능하며, 해당 사무국은 반덤핑 규제 전체 절차 중 청문회 참석 허용
6	최종 결과 및 권장사항 공표	당국은 이해 당사자의 최종 의견 제출을 검토한 뒤, 최종 결과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공표함

자료:코트라,인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2019

(사례) 인도의 對한 반덤핑 사례(섬유)[45]

■ **(현황) 인도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3일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확정**

- 동 품목은 스판덱스(Spandex) 혹은 라이크라(Lycra)라는 품명으로 주로 불리며 에어로빅, 수영복, 골프 자켓 등 운동복 소재로 사용됨

■ **(주요 내용)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은 HS 5404.1100 품목으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 대만 · 베트남산에 대해 부과 조치됨**

- 한국산에 대해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17년 5월 3일부터 5년간임
- 동 품목에 대한 비특혜 일반양허관세는 29.441%이며 한–인도 CEPA에 따라 17.39% 특혜세율이 적용되어 왔음
- 금번 조치로 FTA 특혜관세에 반덤핑관세가 추가로 부과됨

구분	주 요 내 용
HS코드 (해당국)	5404.1100
품명	스판덱스(Spandex) 혹은 라이크라(Lycra)
피제소국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결과	한국산에 대해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 추가
기간	2017년 5월 3일부터 5년간

03

한-인도 CEPA에서의 무역구제

한-인도 CEPA 반덤핑관세제도

■ **한-인도 CEPA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비해 완화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조사신청 정보교환**

•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열흘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할 의무 협정문 상에 명시[46]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1	조사신청 정보교환	반덤핑조사신청서(제소장)의 접수 사실을 조사개시 이전에 수출국 정부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의무 사항

•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수입국 조사당국이 반덤핑조사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조사개시이전에 수출국 정부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고 있지 않음[47]

■ **최소부과원칙(LDR)의 도입**[48]

• 한-인도 CEPA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의무화하고 있음

• 최소부과원칙 : WTO 반덤핑 협정에는 덤핑마진보다 낮은 규모의 반덤핑관세가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하다면, 그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규정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2	최소부과원칙 (LDR)	WTO 반덤핑협정 제9.1조는 확정반덤핑관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8.1조는 가격인상약속과 관련하여 최소부과원칙을 권장하고 있음	한-인도 CEPA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의무화

•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규모를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함. 예를 들어 덤핑마진이 8%로 판명된 경우에 수입국은 최대 8%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에 10%를 초과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제로잉 금지[49]

• 제로잉(zeroing)이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규정한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덤핑율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임의적으로 높이는 관행임

〈제로잉(Zer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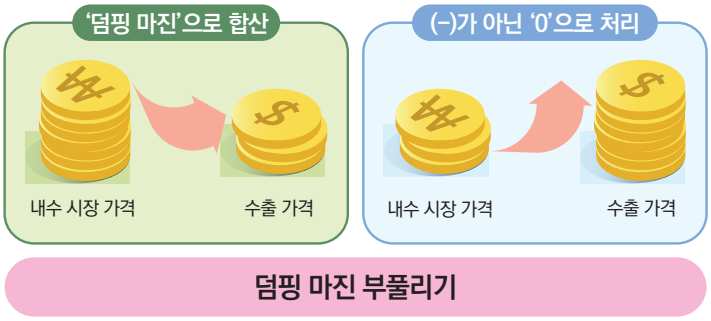

• 즉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 마진을 0으로 처리

→ 전체 덤핑 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50]가 존재

• 덤핑마진 산정 원칙: 먼저 각 상품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3	제로잉 금지	제로잉이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규정한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와 관련된 사항임	제로잉을 협정문 상에서 금지하기로 규정함

■ 재심 종료 후 동일물품 조사금지

• 한-인도 CEPA에서는 반덤핑 조사 종료 이후 1년 이내 동일 물품 조사금지를 규정[51]함

• WTO 반덤핑협정에 없는 조항으로서, 한-인도 CEPA에 신설된 조항

구분		WTO 반덤핑협정	한-인도 CEPA
4	기타 (동일물품 조사금지)	-	반덤핑 조사 종료 이후 1년 이내 동일 물품 조사 금지를 규정함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

■ **한-인도 CEPA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기본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은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
- 한-인도 CEPA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
1	발동요건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상대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할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52] 할 수 있음
2	사전협의 및 기회제공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상대국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해야 한다고 명시[53]
3	1년 이내 조사 완료	어떠한 경우라도, 조사는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54]
4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중복 적용 배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함[55]

■ **특히, 한-인도 CEPA 협정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서는 WTO 체제와 다른 요소들을 포함[56]**

구분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한-인도 CEPA
1	발동요건[57]	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 인과관계의 입증 요구	– FTA에 의한 관세인하와 수입증가간 인과관계 입증요구[58] – 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 인과관계의 입증요구
2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동시적용 배제[59]	–	– WTO 긴급관세조치가 발동되는 동안에는 한-인도 CEPA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불가
2	사법 행정재판 재심 가능[60]	–	–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의 재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가능 – 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은 사법적 재심을 제외하고는 수정될 수 없음
3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제한[61]	–	– WTO 긴급관세조치 적용시 상대국산 상품을 적용대상에서 배제 가능

58) 원산지 상품이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결정은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가 수입증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진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원인과 동등하거나 그 보다 더 클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의개시 또는 종료와 수입증가 간의 기간 경과가 그 자체로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수입증가가 명백히 그러한 인하 또는 철폐와 무관한 경우에는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인도편 India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V

우리기업의 한-인도 CPEA관련 수출애로사항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2. 서명권자 불일치 등
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항 사례
4.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상 개정된 HS 요구
5.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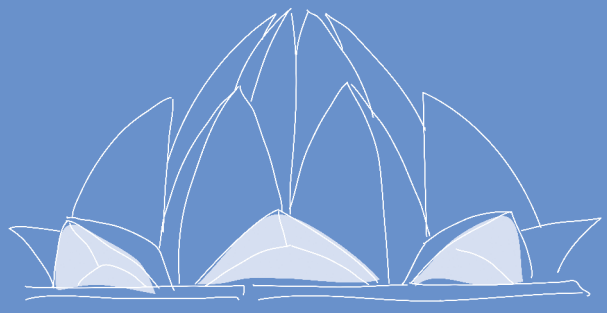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애로사항

■ **인도세관에서 한-인도 CEPA협정 적용을 위해 제출한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통관을 보류**

관련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

•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대한민국 원산지 물품	인도 원산지 물품
• 세관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2014.5.15 추가 지정)] •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016.3.30 추가 지정)]

■ **인도의 통관 환경**

• 인도는 13개의 관할지역별 세관이 하부 세관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명목상 세관행정이 통일되어 있음

• 그러나 관할 세관당국 간에 소통 미비로 인해 실제로는 관세통관상의 애로가 많이 발생

• 즉,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당국별 품목분류 기준 또는 협정세율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며 세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따른 인정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 인도 정부 섬유부의 섬유산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인도 전역에 26개가 넘는 지사를 두고 있음
- 주요 업무 섬유제품에 대한 ① 제3자 인증, ② 수출인증, ③ 기술교육 및 ④ 시험 · 검사 ·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

■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수산물수출개발원은 수산물 수출 보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또한 해양 제품의 원료, 고정 표준, 규격, 교육, 검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해외 해산물을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문제해결

■ **인도세관과 수입바이어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최초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음을 통지하여 세관의 통관진행을 완료**

■ **그러나 사전적 대응으로서 향후 인도수출시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을 진행하기로 함**

※ 관련법령참조

1. 한–인도 CEPA 제4.2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3. 동 시행규칙 부칙(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8조 4항 1호의 섬유위원회 및 수산물수출개발원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봄

2. 서명권자 불일치 등

애로사항

-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인도세관에 제출
- 그러나 인도세관은 ① 서명권자 미확인, ② 발급담당자 서명의 경미한 오류 및 ③ 서명 불일치 등의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거나 보류 혹은 특혜적용을 거부함

미세한 서명 차이로 인한 통관보류 사례(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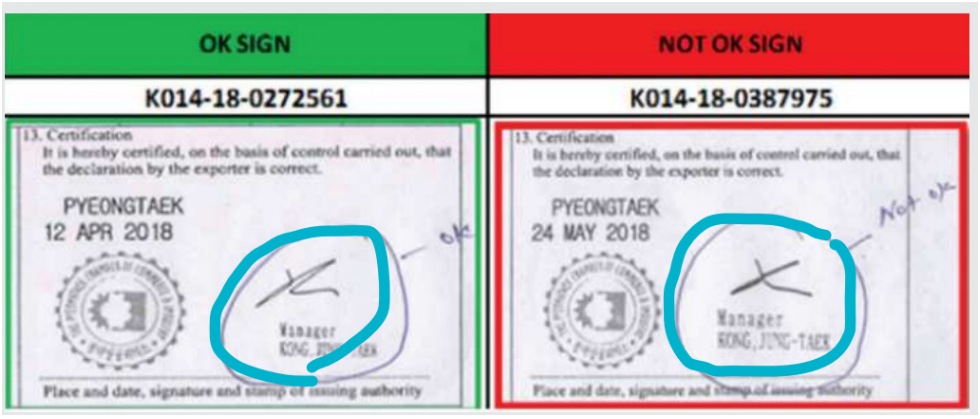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활동사례집 (2018)

관련법령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한-인도 CEPA는 기관발급으로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기관에 신청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명권자

- 서명권자는 수출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함
-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서명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상대국에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
- 영어로 작성될 것
-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원산지증명서 세관 발급절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발급절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 원산지증명서의 수정

- 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함.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러한 변경은 서명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승인 및 증명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의 경미한 불일치**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이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상 해당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 해서는 안 됨

■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원산지증명서와 서면신고서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발 견한 경우, 수입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정*된 증명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 원산지오류보정제도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나 서식요건에 사소한 오류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는 제도 (FTA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 세관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 내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문제해결

■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서명권자를 기 서명권자로 확인, 이와 관련한 유효한 증빙 서류 및 협조 서한문을 인도세관에 발송하여 통관이 완료됨**

※ 관련법령참조 : 한-인도 CEPA 제4.2조(원산지 발급 기관),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7조(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수출자 : 성명, 주소, 수출국,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생산자 : 성명, 주소, 생산국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수입자 : 성명, 주소, 수입국	5. For Official Use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표시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운송수단 등(선택사항):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등	6. Remarks ✓소급발급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표시 ✓도난, 분실 또는 멸실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재발급하는 경우: "CERTIFIED TRUE COPY"(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함께 표시)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HS Code 6단위	✓품명(상세하게 표시, 통상적으로 송품장 등 상업서류와 일치하게 기재)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WO, CC, RVC%, SP 등 실제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송품장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및 장소를 적은 후 서명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내 발급 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기재,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 날인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수출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14번란에 "√" 표시 후 제3국 송품장 발급한 회사 상호, 주소 및 국가명 기재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일부 수정

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항 사례

애로사항

-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후 인도세관에 CEPA 적용을 위해 C/O를 제출
-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선적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으며, 소급문구(ISSUED RETROSPECTIVELY)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특혜적용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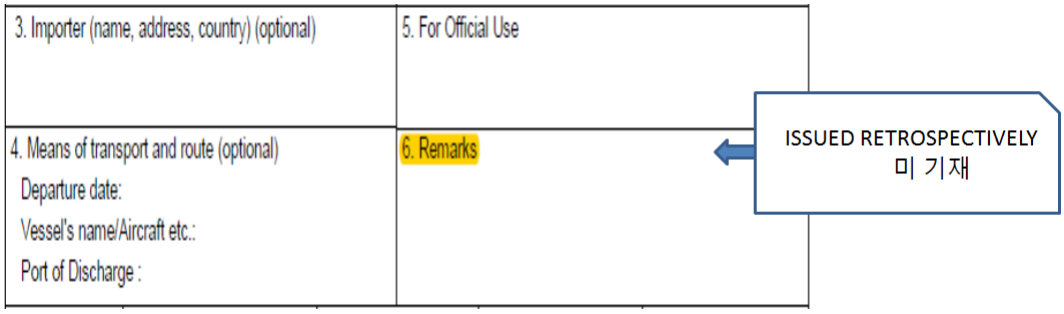

관련법령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 이후 발급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를 제6란에 기재하여 발급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ⅰ)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소급발급될 수 있음

ⅱ) 의도하지 않은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및 분실된 경우의 진정등본 발급

•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된 경우, 수출자는 제4부본(quadruplicate)*을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진정등본 발급 신청할 수 있음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3부의 부본이 발급됨

발급서류	원본	제2부본	제3부본	제4부본
주요기능	수입자에 제공	발급기관 보유	수입자에 제공	수출자 보유

• 진정등본으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라는 스탬프(세로 0.8cm, 가로 7cm)가 포함

• 발급일자는 최초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됨

※ 관련법령참조

1. 한-인도 CEPA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의 4 및 5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및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문제 해결

■ 우리 세관은 근무일 7일 이내에 정상발급된 것임을 확인하는 서한문을 인도세관에 보내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음

• 단, 근무일 산정시 대체공휴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충일, 선거일은 제외되므로 주의

4.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상 개정된 HS 요구

애로사항

■ **상공회의소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인도세관은 개정된 HS코드(HS 2017)를 요구하며 통관을 보류함**

-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를 2007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나, 인도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의미**

- HS코드란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및 통계목적상 마련된 국제공통의 품목분류체계
- 당사국들이 국내법으로 채택하여 시행하는 HS는 관세율의 근거가 됨

■ **HS 2017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방법**

- 수출신고필증: HS 2017 기준
- FTA 협정별 PSR :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각 협정별 기준에 맞게 HS 코드를 기재 후 신청

협정별 HS 기준

HS 기준	FTA 협정
HS 2007	한-인도 CEPA
HS 2012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HS 2017	기타 협정

자료 :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S 개정 연혁

구분	개정내용	HS 6단위 개수
1차 개정 ('92.01.01)	HS 제정 작업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 · 개정	5,018
2차 개정 ('96.01.01)	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원료물질 및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	5,113 (HS4단위: 1,241)
3차 개정 ('02.01.01)	폐기물 및 CITES 협약 대상품목을 특정 호(또는 소호)에 신설하였으며 HS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용어정의 등을 마련	5,224 (HS4단위: 1,244)
4차 개정 ('07.01.01)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제물질 및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를 신설	5,052 (HS4단위: 1,221)
5차 개정 ('12.01.01)	FAO의 요청에 따른 농수산물의 분류체계 강화 및 신상품에 대한 호(또는 소호)를 신설하였으며 불필요한 소호를 통합	5,205 (HS4단위: 1,224)
6차 개정 ('17.01.01)	– FAO요청에 따른 농수산물 등 분류체계 정비 – 환경 · 사회적 관심품목 특게(말라리아 퇴치용 물품, 화학무기제조원료,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소호주 및 소호 신설 – 첨단기술발전 반영(LED 램프 소호 신설, 전자집적회로 범위확대, 전기자동차 소호 신설, 모니터 분류체계 수정 등) –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호(제9620호)신설	5,387 (HS4단위: 1,222)

자료 : 한–인도 CEPA 협정문 및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문제 해결

- **WCO HS 개정본(2007, 2017)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에게 서한문을 요청하여 업체측에 전달**
- **인도주재 관세협력관은 주인도 국세관과 함께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여 해결요청 서한문을 전달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여 인도세관으로부터 HS2007 기준 세번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5.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애로사항

■ **2017년 이후 가정용 의료기기를 제9018.90호로 수출하였으나 현지 인도세관의 수입 세번이 한국발행 세번과 달라 특혜적용 불가**

- 한국에서 수출하는 세번은 제9018.90호(인도 MFN 7.5%, CEPA rate 0%)이나, 인도 수입 세번은 제9019.10-2000호(인도 MFN 7.5%, CEPA rate 0%)임

■ **현재 세계 각국은 물품 관점 및 해석방법의 차이, 기존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 품목분류에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

관련법령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대국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식서류는 최초 C/O발행시 제출하고, 이후 동일 물품의 C/O신청시 제출 생략 가능함

■ **원산지 검증시 대응**

- 품목분류 상이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코드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되어야 함
- 즉 상대국 HS코드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검증시 불충족 위험이 있음을 유의할 것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① 공식서류로 HS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② 우리나라 HS코드로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코드로 추가 인증 처리

문제 해결

■ **인도 수입자로부터 수입국 HS코드(세번)를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서)를 받아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달**

■ **해당 수출자의 인도 수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인도 HS코드(세번)로 C/O 작성토록 상공회의소에 협조 요청**

참고문헌

1)	KOTRA, 인도 시장현황 및 진출 유망 산업(2019), 내용 일부 요약
2)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조 변화(2015), 내용 일부 요약
3), 6), 8)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인도편 (2017) 내용 일부 요약
5)	KOTRA 뉴델리 무역관, 인도의 관세 및 통관제도와 절차, 유의사항 (2018) 내용 일부 요약
7)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インドSVBの概要と関連者からの輸入における留意点 (2019)
11)	KITA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 · 인도 CEPA 개선방향 (2016)
12)	국제원산지정보원 내부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인도 사전심사제도 현황 및 활용사례 (2019) 내용 요약
13)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14~17)	각 기관별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19)~20)	인도 CDSCO 홈페이지 및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6)
21), 24)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 사무소, [해외시장동향] 2016 매기라면 사태로 야기된 인도 식품 수입규정 강화 및 한국식품의 對인도 수출여건 (2016) 내용 요약
23)	http://www.ec21.co.kr/issue-info/international-issues/food_issue/?mod=document&uid=680.
25)	인도 TEC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인증정보(TEC)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6)	관세청,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 (2017) 내용 요약
27)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 KOTRA, 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의 이해(2017)
28)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Consolidated FDI Policy (Effective from June 07, 2016)
29)	https://www.iflr.com/Article/3865145/PRIMER-Indias-new-FDI-e-commerce-rules.html?ArticleId=3865145
30)	https://www.ibef.org/industry/ecommerce/infographic
31)	관세법 제51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32)	관세법 시행령 제72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33)	관세법 제65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44)	무역구제사무국(DGTR) 홈페이지
45)	KORTA, 인도 재무부,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공고 (2017) 내용 요약
46)	한-인도 CEPA 제2.14조
47)	WTO 반덤핑협정 제5.5조
48)	한-인도 CEPA 제2.17조
49)	한-인도 CEPA 제2.18조
50)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51)	한-인도 CEPA 제2.19조
52), 57)	한-인도 CEPA 제2.22조
53)	한-인도 CEPA 제2.23조 다
54)	한-인도 CEPA 제2.23조 바
55)	한-인도 CEPA 제2.23조 차
56)	손기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의 WTO협정과 비교분석 (2016)
59)	한-인도 CEPA 제2.23조
60)	한-인도 CEPA 제2.26조
61)	한-인도 CEPA 제2.27조